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제이티저축은행의 지배구조 현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자료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중 용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다. 관련 규정	4
2. 이사회	5
가. 역할(권한과 책임)	5
나. 구성(이사)	7
다. 활동내역	11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20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21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1
가. 역할(권한과 책임)	21
나. 구성	22
다. 선임기준	22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3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5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47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47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49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49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50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53
바. 사외이사 평가	53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53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54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56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58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58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58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59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0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1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61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61
6. 감사위원회	62
가. 역할(권한과 채무)	62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6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65
라. 감사보조조직 등	70
7. 위험관리위원회	72
가. 역할(권한과 책무)	72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7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3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77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77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78
가. 총괄	78

나. 구성	78
다. 권한과 책임	79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81
 2. 보수체계	 83
가. 주요사항	83
나. 보수 세부사항	86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86
 (첨부1)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89
(첨부2)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규정	103
(첨부3) 제이티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110
(첨부4) 제이티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123
(첨부5)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회규정	125
(첨부6)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규정	130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제이티저축은행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이티저축은행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4년말 현재는 이사회의 57%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4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1명, 경제분야 1명, 회계분야 1명, 경영분야 3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 그 외 관련법령에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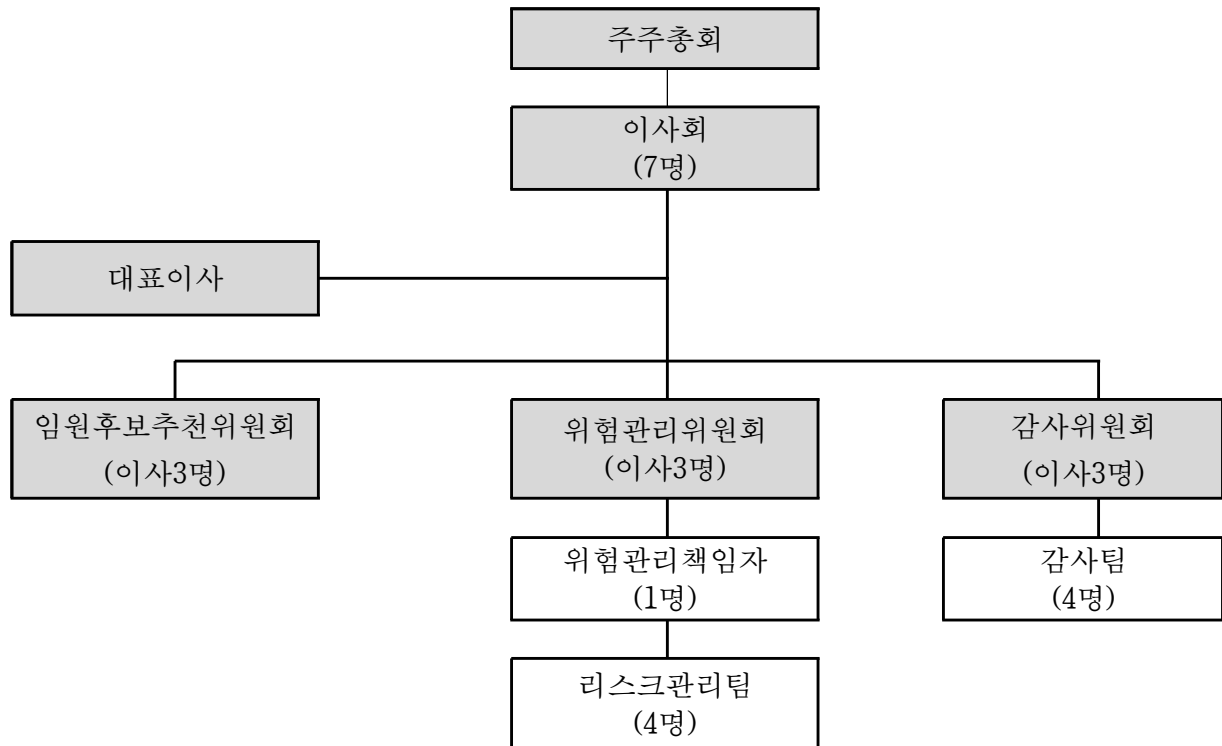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jt-bank.co.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이트 주소 : www.fsb.or.kr)

제이티저축은행은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할 예정 입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24년 12월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는 4명(57%)으로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이티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 3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이티저축은행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 3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이티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위원 3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제이티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 상설 의사 결정기구	4명 / 7명	박중용 / 상임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2명 / 3명	박상주 / 사외	정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보수체계	2명 / 3명	박상주 / 사외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2명 / 3명	곽원곤 / 사외	정관,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 첨부2.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 규정
- 첨부3. 제이티저축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4. 제이티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정관 제47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영목표·전략은 2024년 11월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각 사업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 1월에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 변경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 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2호, 정관 제47조)
2024년도 정관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정관 47조) 구체적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은 2025년 1월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와 종합심사 및 조정 후 경비예산(안)을 편성, 해당 예산의 편성 후 최종 보고 안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확정 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 양수도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4호, 정관 제47조). 이 뿐 아니라 제이티저축은행의 조직 내 중요한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정관 제47조)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2017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내부통제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감사위원회로부터 분기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 ▶ 감사위원회로부터 매년 1회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
- ▶ 준법감시팀으로부터 매년 2회 내부통제체제 운영 실태 점검 보고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제1항제6호, 정관 제47조)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2017년 3월 임시이사회에서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을 수립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을 의결함으로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승계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7호, 정관 제47조)

회사가 계열사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 규정 제 11조 3항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관 제38조)

2024년말 현재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상임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경영을 위하여 직무에 따라 유연한 임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지배구조규범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금융 · 경제 · 경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인 자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024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1명, 경제분야 1명, 회계분야 1명, 경영분야 3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경영분야 전문가이면서 제이티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23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박중용 대표이사가 주주총회(2024년 3월)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박중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대표이사(상임), 이사회 의장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3.01.01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1997.01~2005.02 삼환저축은행 대리 2005.03~2012.09 미래저축은행 차장 2012.10~2015.04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차장 2015.05~2020.02 제이티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장 2020.03~2021.02 제이티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이사) 2021.03~2022.12 제이티저축은행 리테일금융본부장(상무) 2023.01~ 제이티저축은행 대표이사(현임)	

나) 이사 조옥현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상임), 감사위원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감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3.03.30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1983.02~1998.12 한국은행 1999.01~2010.03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 2010.04~2013.03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2013.04~2016.03 롯데카드 상근감사위원 2016.04~2019.02 롯데카드 고문 2019.03~2019.07 KS신용정보 비상근감사 2019.08~2023.03 애큐온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23.03~ 제이티저축은행 상임감사(현임)	

다) 이사 와타나베 타카시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상임)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	
최초 선임일	2021.03.31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2009.10~2017.07 네오라인크레딧대부(주) 대표이사 2014.03~2015.06 KJI대부금융(유) 이사 2014.03~2015.09 하이캐피탈(주) 대표이사 2017.08~2018.05 제이티저축은행 본부장 2018.05~2020.03 TA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2020.03~2021.03 제이티저축은행 비등기이사 2021.03~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현임)	

라) 이사 박상주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사외),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장	공인 회계사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1.03.31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1995.10~2017.12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2018.05~2022.05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2022.06~현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현임)	

마) 이사 손인수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사외), 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1.03.31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2001.05~2006.09 LG CNS 선임 컨설턴트 2006.10~2008.04 (주)모코코 전략기획부장 2016.03~현재 상명대학교 조교수(현임)	

바) 이사 박원곤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사외), 위험관리위원장	변호사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3.03.30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2002.02~2003.11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2003.12~2008.07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2008.08~2012.06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2012.07~2013.02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2013.03~현재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현임)	

사) 이사 최필성

구 분	내 용	비 고
직위 (상임/비상임/사외)	이사(사외), 위험관리위원	미국 공인 회계사
담당 이사회내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최초 선임일	2023.03.30	
현 임기	2024.03.28 ~ 2025.03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주요경력	1998.06~1999.12 해태아메리카 경영관리부 2000.01~2001.04 L&PAccountancy Corporation, Auditor (미국) 2001.06~2003.03 삼일회계법인 금융기관 감사본부 Sr. Associate 2003.10~2012.01 지멘스(주)내부감사 및 준법감시부부장 2012.02~2013.06 타타대우상용차(주) 내부감사실	

	이사 및 윤리고문 2014.03~2015.07 AXA 손해보험(주) 감사팀장 2015.08~현재 현재경영진단 대표이사(현임)	
--	---	--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¹⁾
박중용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제이티저축은행 리테일금융본부 장	23.01.01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2년	임추위 위험위
조옥현	상임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에큐온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 원장)	23.03.30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1년 9개월	감사위
와타나베 타카시	상임	사내이사 전무	-TA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21.03.31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3년 9개월	-
박상주	사외	이사 감사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 원장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21.03.31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3년 9개월	감사위 임추위
손인수	사외	이사 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 원	-상명대학교 조교수	21.03.31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3년 9개월	감사위 임추위
곽원근	사외	이사 위험관리위원장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23.03.30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1년 9개월	위험위
최필성	사외	이사 위험관리위원	-현대경영진단 대표이사	23.03.30	'25.3월정기 주주총회시 까지	1년 9개월	위험위

주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추위, 감사위원회 = 감사위,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안건 처리에 있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직원이 안건 설명 후 참석이사의 질의에 답변하여 안건 취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서 이사회에서 충실한 토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24년 1월 23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1월 15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인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FY2024 중합업무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사내 등기이사에 대한 직책 및 담당직무 부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규정폐지 및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결과 보고
2	2023년 4분기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평가 보고
3	2023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

나) 제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4년 2월 14일(수)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2월 6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인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24년 1분기 부실채권 매각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4년 1분기 대손상각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3년 4분기 부실채권 매각결과 보고
2	2023년 4분기 대손상각 처리결과 보고

다) 제2024년도 2월 정기이사회 : 2024년 2월 27일(화) 10시 3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2월 19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검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4년 1월 경영실적 보고
2	2023년 하반기 내부통제체계 ·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3	2023년 전사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ML/TF) 위험평가 결과 보고
4	2023년 4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5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보고
6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7	PF대출 자율협약을 통한 채권 정상화 관련 보고
8	신용평가모형 검증 결과 보고

라) 제202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4년 3월 13일(수) 14시 2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3월 5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비등기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전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4년도 3월 정기이사회 : 2024년 3월 28일(목) 17시 3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3월 20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사내 등기이사에 대한 직위(직 책) 및 담당직무 부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 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 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 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 안건 (임원 보수총액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8호 안건 (임원 성과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 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4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자체평가 결과 보고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결과 보고

바) 제2024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4년 5월 7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4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문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국고채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4년도 5월 정기이사회 : 2024년 5월 21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5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문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24년 2분기 개인회생채권 공개입찰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24년 2분기 신용회복채권 캠코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4년 상반기 무담보연체채 권 저축은행 공동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2024년 2분기 대손상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 안건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전

번호	보 고 안 건
1	2024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안건 보고
2	2024년 1분기 부실채권 매각결과 보고
3	4월 경영실적 보고
4	2024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안건 보고
5	2024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6	2024년 1분기 여신감리 결과보고
7	PF대출 자율협약을 통한 채권 정상화 관련 보고

8	“웰컴유어 NPL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투자 보고
---	------------------------------

아) 제2024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4년 5월 29일(수)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5월 27일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발송〕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인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준법감시인 등 사임 및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영업총괄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24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4년 6월 11일(화) 14시 3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6월 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인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케이에스올산신정동(주) 채권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웰컴유어 NPL 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투자 보고

차) 제2024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4년 6월 24일(월) 17시 1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6월 21일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발송〕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인수	곽원근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유한회사 보스원 채권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	----

카) 제2024년도 8월 정기이사회 : 2024년 8월 20일(화) 16시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8월 12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신한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 [채권]펀드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IT자가진단 수행을 위한 계열 사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24년 3분기 개인회생채권 공개입찰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2024년 3분기 신용회복채권 캠코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2024년 3분기 무담보연체채권 저축은행 공동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2024년 3분기 대손상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4년 2분기 부실채권 매각결과 보고
2	7월 경영실적 보고
3	2024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4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5	2024년 2분기 여신감리 결과보고
6	2024년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안건 보고
7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체계 ·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8	PF대출 자율협약을 통한 채권 정상화 관련 보고

파) 제2024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4년 9월 4일(수)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8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차주 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PF대출 취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차주 (주)경영 대출금 만기 연 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2024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1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9월 9일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발송〕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24년 3분기 수시상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제2024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4년 10월 15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10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채무조정 내부기준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2024년 11월 19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11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	--	--	----------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24년 4분기 부실채권 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24년 4분기 저축은행 공동매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4년 4분기 대손상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2024년 3분기 부식채권 매각결과 보고

다) 제2024년도 11월 정기이사회 : 2024년 11월 26일(화) 14시 00분

[소집통지일 : 2024년 11월 18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중용	조옥현	와타나베 타카시	박상주	손안수	곽원곤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채무조정 내부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 안건

번호	보 고 안 건
1	10월 경영실적 보고
2	2024년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안건 보고
3	2024년 3분기 여신감리 결과보고
4	2024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5	PF대출 자율협약을 통한 채권 정상화 관련 보고
6	신용평가모형 검증 보고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제이티저축은행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 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이사회는 매년 3월 중으로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평가 중이며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인원과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및 책임 등으로 평가되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29일에 제정된 제이티저축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이사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8년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제이티저축은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제이티저축은행은 이사회 의장으로 박중용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박중용 대표이사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결정 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3월 이사회에서 박상주 사외이사를 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회계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면서 금융권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 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법 제13조)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제이티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3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호저축은행업에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2024년 3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박상주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3월 28일 3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상주	사외	위원장(사외이사)	2024.03.28	'25.03.정기주주총회시까지
박중용	상임	위원(대표이사)	2024.03.28	'25.03.정기주주총회시까지
손인수	사외	위원(사외이사)	2024.03.28	'25.03.정기주주총회시까지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제이티저축은행은 임원 추천 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증하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을 검증하는 적극적 요건 검토를 실시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제이티저축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임원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제이티저축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3개였으며 결의안건은 3개, 보고안건은 없습니다. 또한 3개의 결의안건 중 3개가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년 02월 27일 11시 00분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상주	손인수	박중용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안건1-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박중용)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¹⁾	가결
안건1-2) 감사위원 후보추천 (조옥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1-3)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박상주)	의결권 제한 ²⁾	찬성	찬성	가결
안건1-4)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손인수)	찬성	의결권 제한 ³⁾	찬성	가결
안건1-5) 사외이사 후보추천 (곽원곤)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1-6) 사외이사 후보추천 (최필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박중용 대표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 2) 박상주 사외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 3) 손인수 사외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나) 제2024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년 03월 28일 17시 50분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상주	손인수	박중용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안건1) 임추위 위원장 선임 (박상주)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가결
안건2) 임추위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손인수)	찬성	의결권 제한 ²⁾	찬성	가결

- 1) 박상주 사외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 2) 손인수 사외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3) 평가

2017년 3월 29일 제정 시행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24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임원후보추천위원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1)-1. 제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년 02월 27일)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박중용
- (2) 출생연도 : 1970년
- (3) 출신학교 :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 졸업
- (4) 경력
 - 1997.01~2005.02 삼환저축은행 대리
 - 2005.03~2012.09 미래저축은행 차장
 - 2012.10~2015.04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차장
 - 2015.05~2020.02 제이티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장
 - 2020.03~2021.02 제이티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이사)
 - 2021.03~2022.12 제이티저축은행 리테일금융본부장(상무)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박중용은 20년 이상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이티저축은행에서 이사를 거쳐 상무로 재임하는 등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대표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검증서류 검토 결과 법령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없습니다.

○ 평가

박중용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자격요건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 제2항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선임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평가

박중용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박중용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에서 재직하는 동안 법령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법률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과거 저축은행 업권에서의 경험과 경영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업무전문성,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중용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박중용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대표집행임원 후보

2024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감사위원 후보

<감사위원 후보 1 - 조옥현>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조옥현
- (2) 출생연도 : 1956년
- (3) 출신학교 :
 - 연세대학교 경영학 졸업
- (4) 경력 :
 - 1983.02~1998.12 한국은행
 - 1999.01~2010.03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
 - 2010.04~2013.03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 2013.04~2016.03 롯데카드 상근감사위원
 - 2016.04~2019.02 롯데카드 고문
 - 2019.03~2019.07 KS신용정보 비상근감사
 - 2019.08~2023.03 애큐온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 조옥현은 40년 이상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

으며,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감사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검증서류 검토 결과 법령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없습니다.

○ 평가

조옥현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자격요건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제1항에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에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서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평가

조옥현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요구되어야 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공정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제이티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옥현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조옥현 감사위원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2 - 박상주>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박상주
- (2) 출생연도 : 1967년
- (3)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4) 경력
 - 1995.10~2017.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 2018.05~2022.05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 2022.06~현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 박상주는 25년 이상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 종사자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감사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지배구조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검증서류 검토 결과 법령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없습니다.

○ 평가

박상주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자격요건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제1항에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에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서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평가

박상주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요구되어야 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공정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제이티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상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상주 감사위원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3 - 손인수>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손인수
- (2) 출생연도 : 1971년
- (3) 출신학교 :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University of Wisconsin 석사 졸업
 - Carnegie Mellon University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
- (4) 경력
 - 2001.05~2006.09 LG CNS 선임 컨설턴트
 - 2006.11~2008.04 (주)모코코 전략기획부장
 - 2008.09~2015.02 고려대학교 연구조교/강사
 - 2011.08~2012.04 싱가포르 경영대학 연구원
 - 2014.02~2017.02 고려대학교 기업연구원
 - 2015.02~2016.02 American University
 - 2016.03~현재 상명대학교 부교수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손인수는 20년 이상의 기업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감사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지배구조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검증서류 검토 결과 법령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없습니다.

○ 평가

손인수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자격요건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제1항에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에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서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평가

손인수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요구되어야 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공정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제이티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손인수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 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손인수 감사위원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1 - 박상주>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박상주

(2) 출생연도 : 1967년

(3)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4) 경력

1995.10~2017.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2018.05~2022.05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2022.06~현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2021.03~현재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5) 사외이사 경력

①근무기간 : 2021.03~현재

②근무기간 중 참석률 (2024년도)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16회	100%	14회	100%	2회	100%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박상주는 25년 이상 회계법인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특히 다양한 대외 경력을 경험으로 당사의 경영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경영활동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사외이사에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박상주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근거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의 정관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제40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서는 후보자는 금융업 분야와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주 후보자는 1995년부터 25년 이상 회계 분야에 재직하면서 회계 역할을 장기간 수행하여 회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 비전 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박상주 후보자는 안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박상주 후보자는 이사회 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감사위원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으며 책임감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전에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성실하며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4)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2024년 02월 2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추천결의를 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상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 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상주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2 - 손인수>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손인수

(2) 출생연도 : 1971년

(3)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University of Wisconsin 경영학과 석사 졸업
-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영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

(4) 경력

2001.05~2006.09 LG CNS 선임 컨설턴트
 2006.11~2008.04 (주)모코코 전략기획부장
 2008.09~2015.02 고려대학교 연구조교/강사
 2011.08~2012.04 싱가포르 경영대학 연구원
 2014.02~2017.02 고려대학교 기업연구원
 2015.02~2016.02 American University
 2016.03~현재 상명대학교 부교수
 2021.03~현재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5) 사외이사 경력

- ①근무기간 : 2021년 03월 ~ 현재
 ②근무기간 중 참석률 (2024년도)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16회	100%	14회	100%	2회	100%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손인수는 20년 이상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손인수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근거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의 정관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제40조에서는 후보자는 금융업 분야와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년 이상 기업 및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 비전 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손인수 후보자는 안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손인수 후보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감사위원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을 맡으며 책임감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전에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성실하며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2024년 02월 2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추천결의를 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손인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 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손인수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3 - 곽원곤>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곽원곤

(2) 출생연도 : 1967년

(3)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 졸업

(4) 경력

○ 일반경력

- 2002.02~2003.11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2003.12~2008.07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 2008.08~2012.06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2012.07~2013.02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 2013.03~현재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 2023.03~현재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5) 사외이사 경력

①근무기간 : 2023년 03월 ~ 현재

②근무기간 중 참석률 (2024년도)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기타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16회	100%	13회	100%	-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궁원곤은 20년 이상 법무법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협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의 재직 경협을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의 정관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제40조에서는 후보자는 금융업 분야와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곽원곤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전 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곽원곤 후보자는 안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곽원곤 사외이사는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험관리위원장을 맡으며 책임감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전에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2024년 02월 2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추천결의를 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곽원곤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 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곽원곤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4 - 최필성>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최필성
- (2) 출생연도 : 1968년
- (3) 출신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영대 졸업
- (4) 경력
 - o 일반경력
 - 1998.06~2000.01 해태아메리카(미국) 경영관리부
 - 2001.01~2001.04 L&P Accountancy Corporation(미국)
 - 2001.06~2003.03 삼일회계법인 금융기관 감사본부
 - 2003.10~2012.01 지멘스(주)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부
 - 2012.02~2013.06 타타대우상용차(주) 내부감사실 이사 및 윤리고문
 - 2014.03~2015.07 AXA손해보험(주) 감사팀장
 - 2015.08~현재 현대경영진단 대표이사
 - 2023.03~현재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5) 사외이사 경력

- ①근무기간 : 2023년 03월 ~ 현재
- ②근무기간 중 참석률 (2024년도)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기타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16회	100%	13회	100%	-	-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2) 후보자와의 관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추천인의 관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필성은 미국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현대경영진단 대표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제이티저축은행 정관 제40조에서는 후보자는 금융업 분야와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필성 후보자는 미국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최필성 후보자는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최필성 후보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험관리위원을 맡으며 책임감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전에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제이티저축은행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2024년 02월 2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추천결의를 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최필성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4년 0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

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 대응 능력, 내실 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원곤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중 4명이 연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재선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율	평가 여부
박상주	24년3월28일 ~ 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재선임	100%	적합
손인수		재선임	100%	적합
광원곤		재선임	100%	적합
최필성		재선임	100%	적합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는 별도의 임원선임심사표로 대체합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의 결원이 예정될 경우 직무수행요건과 회사의 성격,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해당사항 없음
-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 (3) 후보군 현황: 해당사항 없음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2024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지배구조연차보고서 - 2.이사회 - 다.활동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연차보고서 -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라.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다) 감사위원회

[지배구조연차보고서 - 6.감사위원회 - 다.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라) 위험관리위원회

[지배구조연차보고서 - 7.위험관리위원회 - 다.활동내역 및 평가] 참조

마) 보수위원회 : 해당사항없음

바) 기타 위원회 : 해당사항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박상주

(1)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상주는 2024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6회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14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상주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65분 활동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손인수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손인수는 2024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6회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14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손인수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65분 활동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곽원곤

(1) 활동내역

사외이사 곽원곤은 2024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6회 모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9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곽원곤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35분 활동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최필성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최필성은 2024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6회 모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9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최필성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35분 활동하였습니다.

마)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실적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박상주	16	16	43	14	14	29	-	-	-	2	2	6	665분
손인수	16	16	43	14	14	29	-	-	-	2	2	6	665분
곽원곤	16	16	43	-	-	-	9	9	12	-	-	-	635분
최필성	16	16	43	-	-	-	9	9	12	-	-	-	635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현재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24년도에 시행한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연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과정명	전사원이 알아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기간	2024.05.13. ~ 2024.05.26			
성명	박상주	손인수	곽원곤	최필성
참석 여부	참석	참석	미참석	미참석
수료 여부	수료	수료	미수료	미수료
교육 시간	2.5시간	2.5시간	0시간	0시간

교육과정명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 검사 및 사례			
교육기간	2024.05.01. ~ 2024.05.31			
성명	박상주	손인수	곽원곤	최필성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수료 여부	수료	수료	수료	수료
교육 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박상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상주 사외이사는 25년 이상의 회계법인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높은 식견을 갖추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손인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파악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
규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곽원곤 사외이사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높은 식견을 갖추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의견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최필성

가)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
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필성 사외이사는 미국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고 경영전문가로서 역량과 높은 식견을 갖추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2024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2017년 3월 29일 제정 시행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24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 사외이사 : 사외이사 박상주 (2024년 3월 28일 선임)

활동 내역 :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후 특정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2024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박상주

가) 재직기간

2021년 03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만원	
	기본금	2,76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40만원	식대 월 20만원 X 12개월
		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2) 사외이사 손인수

가) 재직기간

2021년 03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만원	
	기본금	2,76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40만원	식대 월 20만원 X 12개월
		만원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꺻원곤

가) 재직기간

2023년 03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만원	
	기본금	2,76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40만원 만원	식대 월 20만원 X 12개월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4) 사외이사 최필성

가) 재직기간

2023년 03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만원	
	기본금	2,76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240만원 만원	식대 월 20만원 X 12개월 회의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4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최필성	23.03.30	*25.03월 정기 주주총회시	1년 9개 월	위험위 (23.03~현재)		현재경영진단 대표이사 <2015.08~현재> AXA 손해보험(주) 감사팀장 <2014.03~2015.07> 타타대우상용차(주) 내부감사실 이사 및 윤리고문 <2012.02~2013.06> 멘스(주)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부 부장 <2003.10~2012.01> 삼일회계법인 금융기관 감사본부 <2001.06~2003.03> L&PAccountancy Corpora tion, Auditor (미국) <2000.01~2001.04> 해태아메리카 경영관리부 <1998.06~1999.12>
곽원곤	23.03.30	*25.03월 정기 주주총회시	1년 9개 월	위험위 (23.03~현재)	위험관 리위원 장 (23.03~ 현재)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2013.03~현재>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2012.07~2013.02>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2008.08~2012.06>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2003.12~2008.07>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2002.02~2003.11>
김준길	22.03.21.	*23.03월 정기 주주총회시	1년	위험위 (22.03~23.03)		금융감독원 <1999.01~2018.12>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77.02~1998.12>
손인수	21.03.31	*25.03월 정기 주주총회시	3년 9개 월	감사위 (21.03~현재) 임추위 (21.03~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 학과 조교수 <2016.03~현재> American University <2015.02~2016.02> 고려대학교 기업연구원 <2014.02~2017.02> 싱가폴경영대학 연구원 <2011.08~2012.04> 고려대학교 연구조교/ 강사 <2008.09~2015.02> (주)모코코 전략기획부장 <2006.10~2008.04> LG CNS 선임컨설턴트 <2001.05~2006.09>

박상주	21.03.31	‘25.03월 정기 주주총회시	3년 9개 월	감사위 (21.03~현재) 임추위 (21.03~현재)	감사위, 임추위 위원장 (21.03~ 현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2022.06~현재>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2018.05~2022.05>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995.10~2017.12>
박재준	17.03.29	‘23.03월 정기 주주총회일	6년	위험위 (17.03~23.03)	위험위 위원장 (22.03~ 23.03)	SC제일은행 이사대우 <1986.03~2016.03>
이수영	16.03.30	‘22.03월 정기 주주총회일	6년	사추위 (16.03~17.03) 위험위 (17.03~22.03)	위험위 위원장 (17.03~ 22.03)	무궁화신탁 고문 <16.11~현재> JT친애저축은행(주) 사외이사 <13.03~19.03> 오릭스저축은행 행장 <10.12~13.01> 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09.09~11.9> Best Specialized Bank 은행장 <08.07~10.11> 토마토저축은행(주) 부행장 <03.09~08.07> 이레캐피탈(주) 전무이사 <01.12~03.06> 새한종합금융(주) 본부장 <80.05~01.11>
이택원	15.01.19	‘21.03월 정기 주주총회일	5년 11개월	사추위 (15.01~17.03) 감사위 (15.01~21.03) 임추위 (17.03~21.03)	임추위 감사위 위원장 (17.03~ 21.03)	JT친애저축은행(주) 사외이사 <12.10~18.03>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11.09~17.02> SC저축은행 이사 <09.12~10.12> SC제일은행 상무대우 <05.08~09.10> SC제일은행 부장 <71.01~03.05>
이덕근	15.01.19	‘21.03월 정기 주주총회일	5년 11개월	사추위 (15.01~17.03) 감사위 (15.01~21.03) 임추위 (17.03~21.03)		JT친애저축은행(주) 사외이사 <12.01~18.03> 예교회계법인 전무이사 <17.07~현재> 다산회계법인 전무이사 <09.10~17.06> (주)원글리쉬 이사 <08.03~09.09> 다산회계법인 이사 <99.09~08.02> 고합그룹 경영전략본부 팀장 <97.08~99.07>

주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추위, 감사위원회 = 감사위,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제이티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3> 제이티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1부.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제이티저축은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제이티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것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 결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임기 만료 30일 전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비상계획

제이티저축은행은 정관 제46조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당 직무의 이사가 없을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이티저축은행 주주총회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로 1명(와타나베 타카시)을 지정 하였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의 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는 이러한 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당행의 대표이사 후보는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 평가

후보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 자격요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서는, 동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제이티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 것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24년 2월 27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박중용 후보자는 2015년 당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팀장, 기업금융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소비자금융본부장 등의 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을 거치는 동안 다년간 축적한 기업영업부문, 리테일영업부문과 경영전략부문을 토대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영업노하우로 업무수행의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박중용 후보자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박중용 후보자는 경영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에서,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박중용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검증하고 2024년 2월 27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제이티저축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1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4.02.2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박중용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2024.03.28	주주총회 소집 및 대표이사 선임안건 상정	
2024.03.28	대표이사 선임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제이티저축은행은 2017년 3월 29일에 신설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경영 승계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는 이사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2024년도에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3) 후보군 현황

2024년도에 관리중인 후보군 현황은 없습니다.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2017년 3월 29일에 신설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에 따라 매년(또는 매 사업년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2025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제이티저축은행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관련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부서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가,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보수기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위원 1인과 독립성이 검증된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6조, 제22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1항, 제20조 1항)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전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이사회등 부의안전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일원인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부의안전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이사회 안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부의안전 및 감사위원회 안전을 통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마련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및 선임절차(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직위에서 대면회의 방식을 통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작성된 외부감사인 후보평가표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입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내부감사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주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이에 따라 2024년 중 내부감사 결과를 총 4회(분기 1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위원은 2024년 중 총 16회 진행된 이사회 안건 등 총 1,17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 총회일 6주전까지 대표이사로부터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의 3 및 4, 정관 제63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영

업보고서를 2025년 2월 12일 제출받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활용하여 검토하였고,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보고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2025년 3월 12일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447조 4, 정관 제 63조)

또한 2025년 2월 12일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제19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전사통제 82건, 업무프로세스 302건, ITGC 37건 등의 설계·운영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내부감사팀의 감사를 거쳐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2월 25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1항,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2항),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평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5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2024년 1월 23일, 5월 21일, 8월 20일, 11월 19일에 각각 이사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위원회 내 대표는 사외이사로 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1항, 정관 제60조,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중임일	임기 만료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박상주	사외	위원장	‘21.03.31	‘24.03.28	2025년 3월정기 주주총회일까지	해당 (공인회계사)
손인수	사외	위원	‘21.03.31	‘24.03.28	2025년 3월정기 주주총회일까지	-
조옥현	상임	상근감사 위원	‘23.03.30	‘24.03.28	2025년 3월정기 주주총회일까지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4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안건은 의결안건 29건, 심의안건 3건, 보고안건 8건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1월 23일 13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24.01.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심의) 2023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나.(보고) 2023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2023년 하반기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보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3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의결) 2023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2월 14일 1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4.02.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FY2023, 제18기>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발행의 건 <FY2023, 제18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4년 1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도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2월 27일 10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2.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의결)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3월 13일 14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3.0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외부감사인의 「2023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 (FY2024 외부감사 계획) <KPMG>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발행의 건 <FY202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4년도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17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박상주 위원장 선임
나.(의결) 임원 보수총액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의결) 임원 성과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의결) 2024년도 임원성과보수체계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박상주 사외이사는 본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함.

바) 2024년도 제6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5월 21일 1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4.05.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2024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2024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4년 2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4년도 제7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6월 11일 14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5.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의결)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4년도 임원성과보수 대상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4년도 제8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6월 24일 17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6.20.(소집절차 생략동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자) 2024년도 제9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7월 26일 10시 00분
 [안건 통지일 : 2024.07.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2024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건		특이사항 없음			
나.(보고) IT자가진단 수행을 위한 계열사간 업무 협약 체결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2024년 상반기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보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24년도 제10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8월 20일 15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4.08.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심의) 2024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자체 점검 결과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2024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이사회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의결) 2024년 3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2024년도 제11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9월 11일 9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4.09.06.(소집절차 생략동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의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2024년도 제12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10월 15일 1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4.10.0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보고) 2024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의결)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용역 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2024년도 제13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11월 19일 1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4.11.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심의)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의결) 2024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2024년 4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2024년도 제14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4년 12월 24일 14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24.12.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욱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심의)안전에 대한 의견					
가.(심의) 20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의결)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및 선임절차에 관한 건 <FY2025, 연속 3개 사업연도(제20기-제22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의결)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건 <FY2025, 연속 3개 사업연도(제20기-제22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의결) 2025년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2017년 3월 29일 제정 시행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24년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위원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 다양성),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소요시간, 안전의 적정성), 경영진 견제(의결 과정의 적법성, 독립성의 보장)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 2024년 감사위원회 구성 · 운영실태가 “양호”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조기구로 감사팀을 두고 있으며, 팀장과 3명의 팀원(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0조 2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8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이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거나 지원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4.01.23	감사위원회	1. 2023년도 하반기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보고서 제출의 건 2. 2023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3. 2023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2023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보고의 건 5. 2023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02.14	감사위원회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FY2023, 제18기>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발행의 건<FY2023, 제18기> 3. 2024년 1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2024.02.27	감사위원회	1.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2023년)
2024.03.13	감사위원회	1. 외부감사인인 「2023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KPMG)(FY2024 외부감사 계획) 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발행의 건(FY2023) 3.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건
2024.03.28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임원 보수총액 책정의 건 3. 임원 성과보수 결정의 건 4. 2024년도 임원성과보수체계 운영(안)
2024.05.21	감사위원회	1. 2024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2. 2024년 2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3. 2024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06.11	감사위원회	1.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2. 2024년도 임원성과보수 대상자 변경의 건
2024.06.24	감사위원회	1.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2024.07.26	감사위원회	1. 2024년 상반기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보고서 제출의 건 2. 2024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IT자가진단 수행을 위한 계열사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2024.08.20	감사위원회	1. 2024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2.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이사회 보고의 건 3. 2024년 3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4. 2024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자체점검 결과 보고의 건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4.09.11	감사위원회	1.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2024.10.15	감사위원회	1.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용역 협의 건 3. 2024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11.19	감사위원회	1. 2024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2. 2024년 4분기 부실책임심사 및 결과의 건
2024.12.24	감사위원회	1.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및 선임절차에 관한 건 2.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건 <FY2025, 연속 3개 사업연도> 3. 2025년도 감사계획 승인의 건 4. 20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자체점검 결과 보고의 건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회사가 갖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책무는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합니다.

2) 구체적 역할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라)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마)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 위험관리위원회 규정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 3월 처음 신설되었으며,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2024년말 현재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3명 (사외이사 2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곽원곤	사외	위원장	‘24.03.28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박중용	상임	위원	‘24.03.28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최필성	사외	위원	‘24.03.28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는 제이티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9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외에도 분기별로 위험관리현황 점검, 하부위원회인 위험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 1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2월 27일 오전 10시

[소집 통지일: 2024. 2. 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100%초과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전

제1호 『2023년 4/4분기 위험관리현황 보고』

제2호 『2023년 4/4분기 위험관리운용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나) 2024년도 제 2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소집 통지일: 2024. 3. 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권제한 ¹⁾	찬성	찬성	곽원곤 위원장 선임
나. 2호안건 2024년 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곽원곤 사외이사 본인 안전에 대해 의결권 제한함.

다) 2023년도 제 3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
〔소집절차 생략 동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IPO 수요예측 참가 및 공모주 청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도 제 4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5월 21일 오후 1시
[소집 통지일: 2024. 5.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한도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유가증권 투자 규정 관련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전

제1호 『2024년 1/4분기 위험관리현황 보고』

제2호 『2024년 1/4분기 위험관리운용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마) 2024년도 제 5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6월 27일 오후 4시
[소집절차 생략 동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차주 (주)송디엔피 부동산PF 사업성평가 상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4년도 제 6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소집 통지일: 2024. 8. 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위험관리지표 ‘위기’ 단계 위기 대응책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고안전

제1호 『2024년 2/4분기 위험관리현황 보고』

제2호 『2024년 2/4분기 위험관리운용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사) 2024년도 제 7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10월 24일 오후 2시
〔소집 통지일: 2024. 10.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초과에 따른 원인보고 및 대응책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전 2024년 유가증권 투자한도 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4년도 제 8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소집 통지일: 2024. 11. 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전	의결안전 없음			

1) 보고안전

제1호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 보고』

제2호 『2024년 3/4분기 위험관리현황 보고』

제3호 『2024년 3/4분기 위험관리운용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자) 2024년도 제 9차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12월 24일 오후 4시 30분
〔소집 통지일: 2024. 12. 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곽원곤	박중용	최필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부동산PF사업성평가 상향평가 적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제이티저축은행은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제정 시행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근간으로, 이사회는 2024년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험관위원회 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과정의 적법성,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이 포함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실태가 “양호”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4년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 행정지도 등 조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제이티저축은행은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이티저축은행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이티저축은행의 주요 보수정책에 있어서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관련 내부규정 사항은 기존 『감사위원회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를 그 근거로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10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안건 및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제이티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위원회 내 대표는 사외이사로 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제이티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3인(박상주, 손인수, 조옥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박상주, 손인수)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박상주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박상주 감사위원장은 회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이고, 조옥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종사했던 전문가이며, 손인수 감사위원은 교육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교육을 지도 중인 전문가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상주	사외	위원장	2024.03.28	'25년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손인수	사외	위원	2024.03.28	'25년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조옥현	상임	위원	2024.03.28	'25년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체계 감독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03월 28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임원 보수의 결정 및 성과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임원 성과보수의 운영 및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제이티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임원성과 보수체계의 설계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 성과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 및 성과보수의 비율과 이연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개최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제이티저축은행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2025년 2월 개최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제이티저축은행의 모든 사업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 03월 28일에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준법감시인 1명, 위험관리책임자 1명으로 총 6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6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준법감시인 1명, 위험관리책임자 1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0	-

※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설명 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4년 중 보수위원회 역할로서 총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제3차 감사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안전통지일: 2024.02.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의결)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의결)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승인의 건(2023년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제2차(제5차 감사위원회): 2024년 3월 28일

[안전통지일: 2024.0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전					
	가. (의결) 임원보수총액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의결) 임원성과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의결) 2024년도 임원성과보수체계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도 제3차(제7차 감사위원회): 2024년 06월 11일

[안전통지일: 2024.05.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박상주	손인수	조옥현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의결) 임원성과보수 대상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제이티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24년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위원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 다양성),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소요시간, 안전의 적정성), 경영진 견제(의결 과정의 적법성, 독립성의 보장)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실태가 “양호”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임원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공통평가 항목인 업적평가에는 부문별로 목표대비 영업이익 달성률 등의 재무적인 지표, 자체업적달성도, 정성적 평가 등이 반영되고 개별평가 항목인 역량 평가에는 경영자마인드 등의 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 상근감사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역량평가하지 않음.

나)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공통평가 항목으로써 부문별로 목표대비 영업이익 달성률 등의 재무적인 지표, 자체업적달성도,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 업적평가와 개별평가 항목으로써 경영자마인드 등의 비재무적인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역량평가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의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제이티저축은행의 성과보수는 전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단기성과보수와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는 장기성과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중 지급한 성과보수액은 63백만원 입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성과보수 지급 이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제이티저축은행 임원의 고정보수는 기본급으로 구성되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변동보수는 단기성과보수와 장기성과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성과보수는 3년간 이연 지급합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제이티저축은행 임원의 성과보수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제이티저축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목표달성도를 토대로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연계하여 보수지급액이 변동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제이티저축은행은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연계한 평가를 통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제이티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들에게 외부 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제이티저축은행은 2024년도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도 중 보수체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주1)}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주2)}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당해연도(2023년)	130	-109	-1.2	207	0.63
당해연도(2024년)	130	-28	-4.6	198	0.66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연도의 전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재한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이사	사외 이사	업무 집행 책임 자	부장	부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사 원
당해년도 (2023년) 임원(11) 직원(196)	보수 총액	4.9	1.1	3.9	14.2	13.4	27.2	21.0	28.3	14.7
	성 과 보수액	0.5	-	1.2	-					
당해년도 (2024년) 임원(11) 직원(187)	보수 총액	5.1	1.2	3.2	14.4	16.3	25.3	23.7	28.7	12.0
	성 과 보수액	0.2	-	0.4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3년)	임원	8	8.8	5(2.6)	5(1.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24년)	임원	6	8.3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 성과보수 대상인원(성과보수액) 기재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3년)	임원	2.6	2.6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3년)	임원	1.9	1.9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1.0	1.0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3년)	임원	1.9	1.9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1.0	1.0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3년)	임원	1.9	1.2	0.7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1.0	-	0.8	0.2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4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4년(t기) 발생분, 2023년(t-1기) 발생분, 2022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기재)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축소액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전년도 (2023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3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4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첨부 1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회사는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JT Savings Bank Co., Ltd”라 한다.1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11.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1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17. 제 1 호부터 제 15 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 1 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 3 조(영업구역) 이 회사의 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①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t-bank.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경기일보(일간지)에 한다.

제 6 조(업무방법서) ① 이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 ② 회사가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자본금과 주식

제 7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 주로 한다.

제 8 조(1 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그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정으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정으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 재산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잔여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결정방법은 재무상태표상 유·무형자산 및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분하거나 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⑦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⑧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⑨ 제 9 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이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에 제한이 있거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다음 각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선임·해임
 2.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3.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 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 분의 1 이상의 양수
 4. 수권자본의 증가, 감소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제 9 조의 4(전환주식)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를 원칙으로 하되,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적대적 M&A 가 우려되거나, 기타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환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할 주식과 2 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2 제 9 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5(상환주식)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격과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2주전에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의 수와 종류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 9 조의 4에 의한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상환 ·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 전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로 한다.

제 11 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 1,000,000주권, 5,000,000주권, 10,000,000주권의 12종으로 한다.

제 12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제 13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15 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이 회사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6 조(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 년 월 일

제 18 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9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의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 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질권의 등록) ① 회사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21 조(권리자의 신고) ① 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 1항 내지 제 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 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22조의2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23 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면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회사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7.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9.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0. 자본금 변경, 제 준비금 자본전입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2.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24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5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31 조(의결권 제한) ①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5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제 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38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제 39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

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내에 5년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 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 41 조 <삭 제>

제42조(업무집행책임자) ① 이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 책임 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받아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 43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선임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②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4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38 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8 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5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46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당 직무의 이사가 없을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47조(이사회 의 권한)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 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8.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9. 상법 제 397 조 내지 제 398 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0.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10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의3.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12.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13.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5.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7.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18. 주주총회 위임사항
19.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이사의회 소집) ① 이 회사는 이사의회의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의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⑥ 이사회 소집통지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7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49 조(이사회 결의 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제 50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1 조 <삭 제>

제 52 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53 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 54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5 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5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56 조(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57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58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 ②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제6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5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⑩ 제 52 조, 제 53 조, 제 55 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6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1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6 장 회 계

제 62 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매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3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 447조의 4 제 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4 조(이익금의 처리) ① 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5 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금액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66 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65조 제 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해 이사회에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67 조(회계규정) 이 회사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68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9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인터넷홈페이지 공고기간은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임(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7 장 보 칙

제70조(법령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1 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6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영업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 4 조(발기인) (생략)

부 칙(2008.2.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부칙의 폐지) 이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의 부칙 제 3 조를 폐지한다.

제 3 조(사외이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 4 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부 칙(2008.3.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부칙의 폐지) 이 저축은행의 정관 부칙(2008.2.25) 제 3 조, 제 4 조를 폐지한다.

부 칙(2013.9.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9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1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01.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6.1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06.12 부터 시행한다. 단, 제 62 조의 개정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10.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0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03.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0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03. 31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규정명	이사회 규정
버전번호	V8.0
시행일	2024.01.23
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운영 및 부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범위) 회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에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칭한다. 또한 해당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이사의 의무와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시행을 감독하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1. 이사회 및 중요한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다. 2. 안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3. 저축은행에 최대 이익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4. 필요한 정보를 외부, 내부에서 입수하여 항시 조사 및 연구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항시 대내외 윤리법령의 준수를 우선한다. ② 이사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심각한 손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또한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④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와 저축은행 경영의 건전화를 확보해야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저축은행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제5조 (이사회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소집권자, 의장) ① 이사회의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본 규정 제15조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사고 등으로 대표이사 의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을 역임한다. ④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는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소집 통지) ①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1주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발송한다. 단 긴급한 사안일 경우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소집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통지에는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린다. 제8조 (결의 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한다. ② 전 항의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이사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 결의 시,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 사항) ①이사회의 부의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이다. ② 이사회의 부의사항에 대해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에 부의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 대표이사가 전결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부의해야 한다. ③ 전 항의 대표이사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별표Ⅱ에 규정한다. 제10조 (결의사항 및 승인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에 정한 것을 별표Ⅰ에 기재한다.
--	--

	제11조 (보고사항) 이사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전월까지의 영업실적 현황과 향후 전망 등, 경영에 관한 사항 3. 영업거래 또는 회사와 자기거래를 실시한 이사에 대한 해당 거래의 주요 사항 4.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사항 5. 각 이사회 관장업무 중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이사 이외의 출석자)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 이외의 출석자를 요청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경과 요령 및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 또는 기록한 후 출석한 이사가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10년간 본사에 보관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다. ③ 회의 자료 등의 첨부 서류는 개최 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 의사록과는 별도로 보관한다. 4. 결석한 이사에게 의사 요령 및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4조 (사무국) 이사회 의사록 작성, 보관, 기타 이사회에 관한 서무사항은 총무부장이 관할한다. 제15조 (선임사외이사 선임) 1. 이사회는 주주총회 후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경우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 2.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시에는 선임이사가 의장이 되어 사외이사를 소집하고 개최 한다. 또한 이후에 개최가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회 의장직을 계속한다. 제16조 (선임사외이사 직무) 1.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 소집과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② 또한 회사는 선임 사외이사가 전 항의 규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로
--	---

	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17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규정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문 서	
승 인 권 자	이사회
제 개 정 일	2024.01.23
다 음 검 토 일	2026.01.23
소 관 부 서	총무팀

<별표 I>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 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8.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9.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0.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10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의3.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12.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3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5.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7.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18. 주주총회 위임사항

19.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별표II>

(대표이사 전결사항)

대표이사 전결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전회 정기이사회 종결부터 다음 정기이사회 개최까지의 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임시이사회를 소집,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일 것.
2. 전결사항을 행사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사 전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별표III> 이사회 승인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

분류	사항	그룹웨어 신청	이사회 보 고	이사회 결 의	비고
주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계약만	○	※ 1	※ 1	※ 1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 시 필요 여부 확인
		○		○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것
	금전을 동반하는 계약(시스템 관련 포함)	○			계약금 3억 원 미만
		○	○		계약금 3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	계약금 10억 원 이상
		○		○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것
	고액의 해약 위약금 (시스템 관련 포함)	○	※ 1	※ 1	※ 1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 시 필요 여부 확인
	중요 소송의 제기 (채권관련 소송제외)	○	※ 1	※ 1	※ 1 소송 내용에 따라 신청 시 필요 여부 확인
자산에 관한 사항	주요 자산 양도 또는 양수	○			대상액 3억 원 미만
		○	○		대상액 3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	대상액 10억 원 이상
	거액의 채권 상각 파산관련 채권 제외)	○			대상액 3억 원 미만
		○	○		대상액 3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		○	대상액 10억 원 이상

	주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수리 및 대차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외)	○			대상액 3억 원 미만
		○	○		대상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대상액 10억 원 이상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거액의 경비 지출 (물품 구입, 광고선전 등)	○			대상액 3억 원 미만
		○	○		대상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대상액 10억 원 이상
	거액의 투자 (거액의 채권 매입 또는 면제)	○			대상액 3억 원 미만
		○	○		대상액 3억 원 이상 한도금액 이하
		○		○	대상액 한도금액 초과
상기외 거래에 관한 사항	지급 품의 등	○			지급액 3억 원 미만
		○	○		지급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지급액 10억 원 이상

※[별표Ⅲ]에서 한도금액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10/100과 12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첨부 3	
규정명	지배구조내부규범
버전번호	V2.0
시행일	2021.12.17.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JT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 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의 선임 및 해임 3.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	---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5분의 4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회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	--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3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전담하는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4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8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 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른다.

제30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1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회사는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회사는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3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4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5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CEO)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9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0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1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 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2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3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문서	
승인권자	대표이사
제개정일	2021.12.17
다음 검토일	2023.12.31
소관부서	준법감시팀

첨부 4

규정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버전번호	V2.0
효력개시일자	2019.02.28
내 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후보를 추천하며, 이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 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추천이유 및 경력, 회사(계열회사 포함)와의 관계 등을 심의하며 재임 여부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한다. ④ 제1항은 해당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5조(소집)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정관 제 48조를 준용한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는 위원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규정 관리준칙에 의한다.
관련문서	정관
승인권자	이사회
승인일	2021.09.08
다음 검토일	2023.09.30
관리자	인사팀

첨부 5	
규 정 명	감사위원회 규정
버 전 번 호	V4.1
시 행 일	2022.03.04
내 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이티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제이티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련 거래처에 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8조 (선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다른 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당해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제12조 (소집절차)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의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의 수립 -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
--	---

	가.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련된 사항 나.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다.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마.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①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①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③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④ 회사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⑤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⑥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⑧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⑨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①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내용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7조 (상근감사위원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전조에 의해 위임 받은
--	--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 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 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21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문 서	감사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내부감사지침
승 인 권 자	감사위원회
제 개 정 일	2022.03.03
다음 검토일	2024.03.31
소 관 부 서	감사팀

첨부 6

규정명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버전번호	V3.0
효력개시일자	2024.05.21
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및 역할) ①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인식 • 평가 • 감시 • 통제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산하위원회) ①위원회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로 위험관리운용위원회를 두며, 위험관리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운용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회의 및 운영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는 등 위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간사로서, 의결권은 없으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의 준비, 안전의 보고 및 상정, 의사록 작성, 기타 위원회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위원인 경우는 의결권이 있다. ③ 위원회 위원, 산하 위원회의 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 타당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관계 있는 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동 출석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위원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심의·의결사항 중 안건의 성격, 사후보고를 통한 시정가능성, 위임 범위의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사항을 산하위원회로 위임 한다. 제10조(보고사항) ① 개별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설정한 리스크한도 대비 운영 현황 2.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3. 산하위원회인 위험관리운용위원회의 의결 사항 4.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
--	---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동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 회의안건, 회의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문서	
승인권자	이사회
제개정일	2024.05.21
다음 검토일	2026.05.31
소관부서	리스크관리팀